

## 2024년 전북도본부 제1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4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장

### I 채용분야 및 모집내용

가. 채용인원: 4명

(단위: 명)

채용분야	직종 (직급)	채용 인원	채용지역	근무기간	채용구분
합계		4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위생직 (7급)	1	전북중부사무소	2024. 5. 3. ~ 2024. 10. 29. (5개월 27일)	가
		1	전북중부사무소	2024. 5. 3. ~ 2024. 10. 31. (5개월 29일)	나
		1	전북서부사무소	2024. 5. 3. ~ 2024. 10. 31. (5개월 29일)	다
		1	전북북부사무소	2024. 5. 3. ~ 2024. 10. 31. (5개월 29일)	라

- 1)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불합격 처리)
- 2)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은 9:00~18:00(주 40시간 기준)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3) 채용지역 내 세부 근무지역은 도본부·사무소 상황에 따라 배치
- 4)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나. 보수 및 근무시간

구분	보수(월)	근무시간	비고
위생직	2,230천원 내외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근무지 내 유연근무 적용)	수당 포함 세전(4대보험 포함) 시간외수당 미포함 보수 외 출장비 별도

- 1) 보수는 '24년도 기준이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고시 내용에 따라 월 기본급은 변경될 수 있음
- 2) 그 외 수당 및 복리후생은 「급여규정(호봉제)」 및 「인사업무처리준칙」, 「기간제근로자운영준칙」 등 본부 내부규정에 따름

## 다. 근무지 상세주소

근무지	주소
전북중부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13층
전북서부사무소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24 신태인국 KT 1층
전북북부사무소	전북 익산시 배산로 4길 9-23, 서부새마을금고 3층

- 1) 위생직의 경우 해당 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지 내 관할 도축장 등 순환 근무
- 2)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타 지역 업무 지원 가능

## 라. 업무내용

구분	담당업무
위생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li> <li>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li> <li>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li> <li>4. 기타 행정업무</li> </ol> <p>*근무지: 해당 관할사무소(도축장, 도계장 등) *근무시간: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p>

## 마. 응시접수 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3. 22.(금)~4. 5.(금) 18:00까지 / 15일 간
- 이메일 접수 : (주)스카우트 채용담당자(jnhe1052@scout.co.kr)
  - ※ 원서접수는 마감시간(2024. 4. 5.(금)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단계별 합격자 통지 : 본부 홈페이지 게재 등

## II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가. 응시자격

채용분야	직종(직급)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위생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 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1)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2) 위생직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

### 나. 제한요건

#### ○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5.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 인사규정 제46조(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43조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제2호의 제한기간에서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승급포함)을 제한한다.
  4. 4대 비위(성폭력·성매매·성희롱, 직장 내 갑질·괴롭힘, 인사비리, 공금횡령)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승급포함) 제한기간을 2배 가중하여 적용하되, 제3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장관이상의 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 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가점제도 및 우대사항

### ○ 사회형평 가점

구분	내용	전형단계별 적용	
		서류	면접
취업지원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

- 1) 가점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2) 가점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3) 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4)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4명 미만인 경우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만 적용(그 외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 ○ 특별가점 : 해당없음

## III 전형방법

### 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등 판단 및 심사
  - 자격요건에 미충족하거나 서류상 결격 사유(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및 제출서류 미제출 시) 확인 시 부적격 처리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평가위원은 채용 위탁대행 업체의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및 학교명,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산, 신체적 조건 등) 작성 금지

※ 작성과정 중 부득이하게 기재해야 할 경우, 관련 부분을 ○○○ 또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작성(예시: ○○대학교 축산학과 등)

- 서류심사 평가 기준(100점 만점)

제출서류				직무분야			비고
적절성	자기소개서			수행능력	직무적합성	경력 등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10점	10점	10점	10점	20점	20점	20점	-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서류심사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배점 기준	
	10점 기준	20점 기준
상	10점~8점	20점~14점
중	7점~4점	13점~7점
하	3점 이하	6점 이하

- 서류전형 합격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 면접방법 : 일반 면접
- 면접전형 평가기준(100점 만점)

심사항목 및 점수				
기본소양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최대 10점)은 별도 적용

- 면접전형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배점 기준(20점 기준)
상	20점~14점
중	13점~7점
하	6점 이하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 면접심사 불합격 처리 기준

- 면접 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정결과, 어느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12점미만으로 평가를 하였을 때

- 면접전형 실시 후 합격대상자 선발

## IV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 고
서류전형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공 통	이메일 접수(스캔합본)
	개인정보 동의서	공 통	이메일 접수(스캔합본)
	자격요건 확인서	공 통	이메일 접수 (각 별도 스캔본)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b>(사회형평 가점)</b>	
	우대사항(가점) 확인서류	해당자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이메일 접수)	최종학력증명서	공 통	증명서 원본 제출,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부 제출
	경력증명서	해당자	해당 기관장 직인 날인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자	경력증명서 제출자
	교육수료증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b>(사회형평 가점)</b>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별도 제출
	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	해당자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	
최종합격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원본)	합격자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통장사본(본인) 1부		
	반명함판(3cm×4cm)사진 2매		
	채용신체검사서(원본)		

-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금지
- 2)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격요건 및 사회형평 가점 증빙서류는 해당 자격 등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며,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전형별 심사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3)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1가지를 제출
- 4)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로만 제출
- 5) 사회형평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정부24([www.gov.kr](http://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
- 6)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하며,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7)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이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할 시 불합격 처리
- 8) 면허(자격)증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최종합격일자 기준**)자격증에 한해 인정



## V 전형일정

- 가. 공고기간 : 2024. 3. 22.(금)~4. 5.(금) 18:00까지 / 15일
-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2024. 4. 5.(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 (주)스카우트 채용담당자(jnhe1052@scout.co.kr)를 통한 이메일 접수
- 다. 서류심사위원회 : 2024. 4. 9.(화)
-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4. 4. 15.(월) 17:00
  - ※ 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통보
- 마.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시험 : 2024. 4. 17.(수)
- 바. 채용점검위원회 : 2024. 4. 22.(월)
-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4. 26.(금) 17:00
  - ※ 본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통보
- 아. 임용예정일 : 2024. 5. 3.(금)
  - ※ 전형일정은 도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VI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 가.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후 확정
  - 면접성적 및 합격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 범위 내에 결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9조(합격 취소 등) 및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임용 추진
    - 결격사유 또는 비위면직자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과 임용은 취소되며 임용 후에라도 계약 해지 및 당연면직 조치
    - ※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나. 예비합격자 운영
  - 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둔다.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VII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가. 채용비위에 따른 부정합격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및 5년간 시험 응시 금지

나. 채용비위에 따른 피해자 발생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조치

## VIII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나. 채용분야 및 지역 모두 중복지원 불가(불합격 처리)

다.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 미 준수 및 입력착오(미기재, 오기재, 허위기재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 응시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합격의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채용분야별 선발배수가 미달하더라도 전형절차 진행

사. 면접전형 지원자 및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 전 사전 안내 및 교육 실시

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한 합격자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인당 40천원 한도 지급

자. 전형일정은 채용 위탁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일정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차.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동시 접속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미리 작성 및 최종 제출 권장

※ 서류 접수마감 시한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됨

## IX 채용서류 반환

가.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나.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미반환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채용담당자 (☎ 063-240-6809)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채용과 관련하여 위생방역본부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위생방역본부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채용전형의 진행, 진행단계별 결과 등 채용관련 정보안내
보유 ·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달성 후 삭제 · 지원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수집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병역사항 ※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위생방역본부 채용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b>동의함</b> <input type="checkbox"/> , <b>동의하지 않음</b>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지원자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지원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선발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귀하**